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

1. 개정 목적 및 경위

제1장: 어법과 기타 표현상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조항을 체계화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비공개 및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우를 추가했다.

제2장 제3절 : 학생회칙 상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기구 중 유일하게 투표의 형식을 가지는 학생총투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을 진행함. 학생총투표의 효력은 학생총회와 동일하기에 이를 명확히 서술하였으며, 학생총회의 권한과 시행에 대해서도 다른 의결기구의 조문과 그 형식을 통일함.

제2장 제4절 : 회칙의 가독성을 높이고, 조문상 상설위원회위원장단으로 묶여 있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회칙과 모순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며,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전학대회의 안건 상정, 안건 상정의 시기를 명시하고 법조문 체계와 분수 표기법을 통일시키기 위함.

제 2 장 제 5 절 : 본 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화하며, 본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투명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 본회 회원이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3.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제3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3.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p>납부의무를 다하지 <u>않은</u> 사람으로 한다.</p> <p>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p>	<p>납부의무를 다하지 <u>아니한</u> 사람으로 한다.</p> <p>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p>
<p>목적 및 경위</p>	<p>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준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딧말'로 통일한다. (「않은」 -> 「아니한」, 「해야한다」 -> 「하여야 한다」, 「~해」 -> 「~하여」)</p>

<p>제7조(구성)</p> <p>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u>산하기구</u>)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5. 특별기구 	<p>제7조(구성)</p> <p>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u>산하기구</u>"라 한다)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5. 특별기구
<p>목적 및 경위</p>	<p>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이하 "OOO"이라 한다)'와 같이 작성한다.</p>

<p>제9조(겸직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3.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4.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5. 새내기학생회장단 6. 동아리연합회장단 2.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u>해임</u>된 것으로 본다 	<p>제9조(겸직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3.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4.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5. 새내기학생회장단 6. 동아리연합회장단 2.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u>사퇴</u>한 것으로 본다
<p>목적 및 경위</p>	<p>일반적으로, 선출직에는 '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주로 임명직에 사용함.) 이에 '사퇴'로 작성한다.</p>

<p>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u>보존</u>해야 한다. 2.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u>노력</u>해야 한다. 3.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4.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사무처리세칙</u>」으로 정한다. 	<p>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u>보존</u>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u>노력</u>하여야 한다. 3.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4.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세칙</u>으로 정한다.
<p>목적 및 경위</p>	<p>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준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딧말'로 통일한다. (「않은」 -> 「아니한」, 「해야한다」 -> 「하여야 한다」, 「~해」 -> 「~하여」)</p> <p>여러 대학의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명칭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 상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p>

	<p>명을 기술하지는 아니한다.</p> <p>예: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한다.</p>
--	---

<p>제11조(정보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3.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u>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u> 2. <u>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u> 3. <u>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u> 4. <u>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 설></u> 	<p>제11조(정보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회의</u>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u>본회의</u>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3. <u>본회의</u>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u><단서 삭제></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삭 제></u> 2. <u><삭 제></u> 3. <u><삭 제></u> 4. <u>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u> 2. <u>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u> 3. <u>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u>
--	---

<p>2. <신 설></p> <p>3. <신 설></p> <p>4. <신 설></p> <p>5. <신 설></p>	<p><u>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u></p> <p>4. <u>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p> <p>5. <u>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p>
---	---

<p>목적 및 경위</p>	<p>'본회 회원', '본회의 회원' 등의 용어는 '본회의 회원'으로 통일하되 '본회의 회원'을 사용했을 때에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만 '본회 회원'으로 쓴다.</p> <p>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한다. (제10조 개정 이유 제2항 참고)</p> <p>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	--

<p>제16조(세칙)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u>의결기구운영세칙</u>에 따른다.</p>	<p>제16조(세칙)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u>세칙</u>에 따른다.</p>
---	---

<p>목적 및 경위</p>	<p>구체적인 세칙명을 언급하고 있는 위임 규정을 대한민국 법령과 동일하게 세칙으로 표기하고자 함.</p>
---------------------------	---

<p>제21조(권한)</p> <p>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p> <p>2.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p> <p>3. <u>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u></p>	<p>제21조(권한)</p> <p>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p> <p>2.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p> <p><u><삭제></u></p>
---	---

<p>목적 및 경위</p>	<p>과거 회칙상으로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될 수 있었음. 그러나 현행 회칙에는 학생총회의 무산시 상정 안건의 논의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p>
---------------------------	--

<p>제26조(지위) <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u></p>	<p>제26조(지위) <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u></p>
<p>목적 및 경위</p>	<p>1. 학생총투표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p> <p>학생총투표는 의결기구에 속하지만, 투표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함. 또한 학생총투표의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현행 조문에는 비상학생총회가 제외되어 있기에 학생총회로 서술하여 이를 포함하고자 함.</p>

<p>제27조(투표권)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u></p>	<p>제27조(투표권) <u>본회의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u></p>
<p>목적 및 경위</p>	<p>1. 학생회칙 상의 용어 사용을 통일하기 위함</p> <p><u>'본회 회원', '본회의 회원' 등의 용어는 '본회의 회원'으로 통일하되 '본회의 회원'을 사용했을 때에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만 '본회 회원'으로 쓴다.</u></p>

<p>제28조(권한) <u>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u> 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u> 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u> 4. <u>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u> 5. <u>그 밖의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u> 	<p>제28조(권한) <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	--

목적 및 경위	1. 회칙 상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기존 회칙 상에는 제 28 조(권한)에 학생총투표의 시행 요건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생회칙 제 2 장제 2 절제 21 조 등을 참고할 때, 본 조항에는 학생총투표의 의결 권한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p>제30조(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2. <u>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u> 3. <신 설> 	<p>제30조(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 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 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 4.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u> 5.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u> 2. <u>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3. <u>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
목적 및 경위	1.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함. 본조의 수정은 학생총투표의 시행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있습니다. 기존 학생회칙은 제 28 조(권한) 조항에 시행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 28 조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존 회칙 제 28 조에 서술되어 있던 내용을 제 30 조에 서술하고자 합니다.

제32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u>중앙투표관리위원회</u> 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2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u>학생총회 의장</u> 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목적 및 경위	1. 투표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 본조의 개정 목적은 결과의 공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33조(정책투표) 1.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4. 정책투표는 <u>제29조</u> 에 따른 투표권자 1/8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3조(정책투표) 1.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4. 정책투표는 <u>제27조</u> 에 따른 투표권자 1/8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목적 및 경위	1. 조항의 참조를 바로 잡기 위함. 정책투표의 투표권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항의 참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제34조(지위)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u>전학대회</u>)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34조(지위)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 <u>전학대회</u> "라 한다)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전학대회
--	---

2.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u>의결과 동등한</u> 효력을 가진다.	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u>의결에 준하는</u> 효력을 가진다.
목적 및 경위	1. 본회 의결기구의 위계를 구별하기 위함.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하위의 의결기구이므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 않음.

제35조(대의원)	제35조(대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전학대회의 대의원</u>이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u>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u> 새내기학생회장단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전학대회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u>이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u>각 학부·학과학생회장</u> 새내기학생회장단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임기만료·탄핵·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목적 및 경위	1. 본회 회칙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

<신설>	제35조의2(대의원 정수)
------	----------------

	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정 방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목적 및 경위	대의원의 정수 및 비례대의원 배분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제37조(의장) <u>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	제37조(의장) 1. <u>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u> 2. <u>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
목적 및 경위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회칙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제38조(소집) 1. <u>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u> 2. <u>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u> 1. <u>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u> 2. <u>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5. <u>학생총회의 안건위임</u> 6. <u>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u> 7. <u>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u> 8. <u>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u> 3. <u>의장은 개최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u>	제38조(소집) 1. <u>전학대회 정기회의는 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u> 2. <u>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u> 1. <u>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 2. <u>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5. <u>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u> 6. <u>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u> 7. <u>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u> 8. <u>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u>
--	--

<p>경우, 중앙운영위원회 <u>재석인원 2/3</u>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4.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u>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u></p> <p>3. 의장은 <u>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 단,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u>재적 인원 3분의 2</u>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4.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목적 및 경위</p>	<p>전학대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전학대회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p>

<p><u>제39조(업무)</u>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u> 2. <u>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 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 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 5. <u>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u> 6. <u>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u> 	<p><u>제39조(안건의 상정)</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 2. <u>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 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 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 5. <u>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u> 6. <u>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u>
<p>목적 및 경위</p>	<p>전학대회 안건의 상정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전학대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p>

<p><신설></p>	<p>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p>
-------------------	--------------------------

	<p>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3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 2. <u>제3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
목적 및 경위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안건의 상정시기를 규정해 안건 상정의 회칙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u> 2. <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
목적 및 경위	전학대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u>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u>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u>전학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u>
목적 및 경위	전학대회가 심의의결하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u> 	제43조(산하기구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심의·의결한다.</u>
---	--

<p>2.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u>의결</u>한다.</p> <p>3.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u>의결</u>할 수 있다.</p>	<p>2.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u>심의·의결</u>한다.</p> <p>3.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u>심의·의결</u>할 수 있다.</p>
<p>목적 및 경위</p>	<p>1.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을 인준 및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p>

<p>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p> <p>1.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u>전학대회 대의원</u>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p> <p>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피선거권의 박탈 3. 선거권의 박탈 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 <p>3.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p>4. <u>전학대회 대의원</u>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전학대회 출석정지 3. 대의원 자격정지 (<u>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u>) <p>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p>	<p>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p> <p>1.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u>대의원</u>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p> <p>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피선거권의 박탈 3. 선거권의 박탈 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 <p>3.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p>4. <u>대의원</u>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전학대회 출석정지 3. 대의원 자격정지. 단, 해당 대의원이 <u>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u> <p>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p>
--	--

<p>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p> <p>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7. <신 설></p>	<p>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7. <u>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p>
<p>목적 및 경위</p>	<p>1. 법조문에 맞게 제 44 조제 4 항제 3 호의 괄호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을 덧붙임.</p> <p>2.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하여 세칙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p>

<p>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p> <p>1. 전학대회는 <u>사전심의를 거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p> <p>2. 전학대회는 <u>사전심의를 거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p> <p>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u>채택한다.</u></p> <p>4. 전학대회는 본회 <u>회계의</u>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u>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u></p>	<p>제45조(재정·감사에 관한 사항)</p> <p>1. 전학대회는 <u>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p> <p>2. 전학대회는 <u>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p> <p>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u>심의·의결한다.</u></p> <p>4. 전학대회는 본회 <u>재정의</u>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u>인상·인하안을 심의·의결한다.</u></p>
<p>목적 및 경위</p>	<p>전학대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p>

<p>제47조(대외적 사항)</p> <p>1.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p> <p>2.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u>전학대회 정기회의에</u> 보고하여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p>	<p>제47조(대외적 사항)</p> <p>1.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p> <p>2.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u>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u> 보고하여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p>
---	--

<p>3. <u>회원 전체의 명의로</u>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p>	<p>3. <u>본회의 명의로</u>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목적 및 경위</p>	<p>1.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여 보다 더 짧은 주기의 보고를 위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p> <p>2. 소송법의 요건에 맞도록 회칙을 정비하고자 함.</p>

<p>제48조(의사·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u>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u>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전문기구장 해임에 대한 사항</u> 2. <u>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대한 사항</u> 3. <u>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u> 4. <u>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사항</u>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u> 2. <u>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u> 	<p>제48조(의사·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u>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 해임에 관한 사항</u> 2. <u>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관한 사항</u> 3. <u>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u> 4. <u>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u> 5. <u>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u> 6. <u>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관한 사항</u> 7. <u>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u>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시행하는 안건</u> 2. <u>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u>
---	--

목적 및 경위	정족수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제49조(서면의결)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서면의결) <u>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u>
---	---

목적 및 경위	서면의결의 요건을 제 48 조에서 정의함에 따라 회칙을 정비하고자 함.
--------------------	---

제50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대중에게</u> 공고해야 한다.	제50조(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본회 회원에게</u> 공고하여야 한다
--	--

목적 및 경위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공고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제52조(중앙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u>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u> 3. <신 설> 4. <신 설> 2. <u>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u> 3. <u>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u> 4. <신 설>	제52조(중앙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u>동아리연합회장</u> 3. <u>각 학부·학과학생회장</u> 4. <u>새내기학생회장</u> 2. <u>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탄핵·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u> 3.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u> 4. <u>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u>
---	--

목적 및 경위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중앙운영위원 규정을 수정해 총학생회장단과 각 자치기구 회장만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임기 시작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	---

<p>제54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u>중앙운영위원 1인</u>이 그 직을 대신한다. 	<p>제54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발의된 경우 <u>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u>이 그 직을 대신한다.
목적 및 경위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대리를 선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p>제5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u>매 달 1회</u>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u>의장이 소집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장의 소집요구</u> 2. <u>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4. <u>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u> 5. <u><신설></u> 3.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u>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u> 4.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p>제5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u>2주에 1회</u>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u>의장이 5일 내에 소집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 2. <u>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4. <u>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u> 5. <u>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u> 3. 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u>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 단,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 <p><u><삭 제></u></p>
--	--

목적 및 경위	중앙운영위원회의 활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한달에서 2주로 변경한다. 또한, 임시회의의 소집 요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 공고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	---

<p><u>제56조(업무)</u>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u> 2. <u>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u> 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 4. <u>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u> 5. <u>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u> 	<p><u>제56조(안건의 상정)</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 2. <u>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 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 4. <u>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u> 5. <u>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집과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 6. <u>중앙운영위원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u>
목적 및 경위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의 상정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p><u><신 설></u></p>	<p><u>제56조의2(안건의 상정시기)</u>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 2. <u>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u>
---------------------------	---

목적 및 경위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안건의 상정시기를 규정해 안건 상정의 회칙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
--------------------	--

<p>제 57 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u>세부 문제를</u> 논의하고 결정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u>시행 및 시행일을</u> 의결한다.</p>	<p>제 57 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u>세부 사항을</u> 논의하고 결정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u>시행일을</u> 의결한다.</p>
--	--

목적 및 경위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회의 내용에 따른 의결절차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

<p>제 58 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u>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u> 의결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u>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u>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u>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u>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p>	<p>제 58 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u>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 임명 동의안을</u> 의결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u>본회 산하기구</u>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u>제67조에 따른 집행기구</u>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p>
---	--

목적 및 경위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서 체계 동의안과 임명 동의안의 의결과정을 명확히 하며, 집행기구의 결정 및 집행사항 변경 또는 취소 가능 사항을 구체화한다.
--------------------	--

<p>제 59 조(선거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제 59 조(선거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	---

<p>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u>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u></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해당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u>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u></p> <p>4. 전학대회는 제 3 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p> <p>5. 제 3 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u>의결 불가능하다.</u></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u>세칙에 의거해서 심사하여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u></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u>회칙·세칙·규칙 및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의거해서 심사하여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u></p> <p>4.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u>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u></p> <p><삭 제></p>
<p>목적 및 경위</p>	<p>선거관리를 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의제기 및 당선 취소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당선 취소를 의결하도록 허용하여 선거 과정의 철저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p>

<p>제 59 조의 2(재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3. <신설> 	<p>제 59 조의 2(재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3.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u>
<p>목적 및 경위</p>	<p>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및 산하기구의 재정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p>

<p>제 60 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u>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u> 2. 중앙운영위원회는 <u>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u> 	<p>제 60 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u>회칙 개정안과 세칙·규칙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u> 2. 중앙운영위원회는 <u>세칙·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u>
--	--

목적 및 경위	세칙과 규칙 개정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p>제 62 조(위원회)</p> <p><u>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u></p> <p>2.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p>3. <u>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u></p> <p>4. <u>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u></p> <p><신 설></p>	<p>제 62 조(위원회)</p> <p>1.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p> <p>2.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p>3. <u>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4. <u>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u></p> <p>5. <u>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u></p>
--	---

목적 및 경위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	-------------------------------------

<p>제 63 조(의사의결정족수)</p> <p><u>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 63 조(의사의결정족수)</p> <p>1. <u>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	--

	<p>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관한 사항 <p>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49 조에 따른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목적 및 경위	회의의 개최와 의결에 필요한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회의의 운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p>제 64 조(서면의결)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2.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3. 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p>2. <신설></p>	<p>제 64 조(서면의결) 1. 의장은 제 55 조제 2 항제 4 호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학대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발의안 2.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3. 그 밖에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p>2. 제 1 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한 경우 차회 중앙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목적 및 경위	서면의결의 실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함.

<p>제 65 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대중에게</u> 공고해야 한다.</p>	<p>제 65 조(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본회 회원에게</u> 공고하여야 한다.</p>
목적 및 경위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공고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p>제 154 조(선거권·피선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p>제 154 조(선거권·피선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u>세칙</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p>목적 및 경위</p>	<p>구체적인 세칙명을 언급하고 있는 위임 규정을 대한민국 법령과 동일하게 세칙으로 표기하고자 함.</p>

<p>제 156 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u>선거시행세칙</u>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 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p>제 156 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u>세칙</u>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 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p>목적 및 경위</p>	<p>구체적인 세칙명을 언급하고 있는 위임 규정을 대한민국 법령과 동일하게 세칙으로 표기하고자 함.</p>

<p>제 159 조(<u>선거시행세칙</u>)</p> <p>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u>선거시행세칙</u>」으로 정한다.</p>	<p>제 159 조(<u>세칙</u>)</p> <p>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u>세칙</u>으로 정한다.</p>
---	---

목적 및 경위	구체적인 세척명을 언급하고 있는 위임 규정을 대한민국 법령과 동일하게 세척으로 표기하고자 함.
--------------------	--

제 164 조(재정운용세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 <u>재정운용세척</u> 」 으로 정한다.	제 164 조(세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u>세척</u> 으로 정한다.
목적 및 경위	구체적인 세척명을 언급하고 있는 위임 규정을 대한민국 법령과 동일하게 세척으로 표기하고자 함.

목적 및 경위	